

소방청 신설로 산불 업무 관장 몰라도 너무 모른다

「김충조 의원 외 22인 법안 제출」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국회 김충조 의원 외 22인은 소방청 신설 법안을 의원입법형태로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법안 제4조(소방청의 사무)에 산불진화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마디로 산림을 아는 사람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의 소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신설된 소방청에서 산림청 소관업무의 산불 진압 업무를 이관한다고 할 때 산불예방업무는 산림청에서, 진화업무는 소방청에서 하게 되는 이원화 형태의 조직체계가 됨으로서 현행 산림법과의 충돌·저촉되는 항목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문제를 정부해당 부처와는 사전 아무 조율없이 의원입법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법안 발의에 비록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정부기구 조직 개편을 정부측에 맡기지 않고 국회 단독으로 정부조직을 신설하려는 의도를 저우기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혀둔다.

첫째, 산불과 일반화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불업무는 정부수립이래 50여년간 산림청에서 담당해온 고유 업무로서 산림공무원은 일상의 산림업무에 종사하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만약의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대처를 함으로서 초동진화가 가능한데 소방청에서 관장할 경우 산불예방 업무는 산림청에서, 산불진화 업무는 소방청에서 담당하도록 이를 분리한다면 산림공무원과 소방공무원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미룰 것은 미루고, 부처 이기적인 것은 서로 당기려는, 이와 같이 미루고 당기려는 충돌이 심하다 보면 예방과 진화가 효과적으로 잘 연계되지 못함으로서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여 산불의 대형화만 초래될 것이다.

특히, 인력활용 면에서도 불합리할 것이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업무에 종사하는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원, 영립단원 등 총 3만여 명이 일상 산림업무에 종사하면서 산불예방

에 주력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이들을 즉시 진화인력으로 전환시켜 진화에 참여함으로써 예방인력과 진화인력이 상호 호환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산불예방업무와 진화업무를 분리한다면 소방청에 진화인력을 그 만큼 더 증원하여야 하는 정부구조조정 방향에도 어긋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행정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감안하여 산불업무는 현행대로 산림청이 관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산불예방과 진화업무 분리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산불과 일반화재간에는 화재의 형태 진화방법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반면 모든 행정이 그렇듯 예방업무와 진화업무를 분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정체계라고 본다.

예컨대 소방행정에서 예방점검과 진화업무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산불업무만 예방과 진화업무를 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체계이다. 산불은 전국 임업직 공무원이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경주해 온 업무로서 분리될 경우 산림공무원과 소방공무원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산불의 대형화로써 가꾼 생명의 숲만 참화를 당할 우려가 있다.

산불은 <조기발견→초기진화→집중진화→뒤틀정리→진화확인>의 과정으로 진화되나, 예방과 진화가 분리될 경우 예방인력에 의한 초기진화에 실패하기 쉬울 뿐 아니라, 헬기는 집중 진화시에만 필요하므로 뒤틀정리 및 진

화확인 등은 결국 전국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예방인력이 담당해야 하므로 예방과 진화의 분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 산림용 헬기는 소방용보다는 산림소득 증대의 필수장비인 것이다. 소방청법안 제4조 “소방청의 사무”에 의하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산불진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팔호 내에 산불업무 까지를 소방청에서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소방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불은 화재의 형태와 진화방법 및 진화장비 그리고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서 일반화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시화재의 경우 헬기로 불을 끄는 장면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고 대부분 소화전에 의해 진화되기 때문에 헬기는 진화장비로서의 호환성이 없으며 특히, 산림청 헬기는 산불진화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39%에 불과하고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밤나무해충구제와 솔잎혹파리방제 등 약제방제업무에 50%를 활용하고 있어 헬기를 소방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청 헬기는 소방용보다는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경영장비로서 효능이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계속 산업장비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소방청 신설은 정부구조조정 정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

서 2001년까지 5만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청을 신설하여 직급을 늘리고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모순되고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한 씨랜드사건이나 인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해서 예방될 사안이 아니라 이는 조직신설 이전의 공무원들의 자세에 관한 사항인 것이다. 특히 소방청 신설은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록 그 법안이 의원입법으로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정부조직기구개편문제를 정부 해당부처와는 사전 조율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조직을 신설한다면 정부조직 구조상에 많은 혼란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은 행정부에 맡겨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다섯째, 왜 혼란을 가져올 법안이 상정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현지 여론이다. 산불은 산림을 잘 아는 부서에서 더 잘 진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에 50여 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산림과 산불과의 불가분성 등이 인정되어 선진 임업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 등 모든 나라에서도 산림부서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산불의 예방업무와 진화업무를 분리 관장한다고 함은 행정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불은 항상 뒷불정리가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진화와 예방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단코 이에 반대하는 바이다. (편집인)

